

1. 안 건 명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감사담당관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년 11월 17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2010년 11월 18일

4. 관련근거

1. 지방자치법(2010. 10. 16 법률 제10272호) 제127조
2. 지방재정법(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제36조)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1회계연도 감사담당관의 정책사업인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사업과 행정운영경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1,004만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억8,368만4천원보다 2,63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분야에서 30개 부서에 대해 업무담당자에 대한 불만 민원 또는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담당팀장이 직접 민원을 상담함으로써 민원의 사전적 예방과 해소를 위한 취약분야 청렴 이의신청 개선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비 150만원,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분야에서 차량노후화에 따른 환경순찰용 차량 구매비 2,265만2천원, 고객만족행정분야에서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월 1회 교육실시를 위한 친절교육강사 수당700만원, 고품격의 민원응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관련 책자 및 인쇄물제작비 500만원, 친절직원에 대한 포상금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책업무 추진비를 일괄적으로 10%를 절약하여 182만원, 직원의 집합교육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고객만족 교육과정을 통해 상시학습체재를 구축하기 위한 e - 러닝 콘텐츠 운영 및 서버임대료 450만원,

민원조정심의회의 회의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감축함에 따른 민원조정심의위원 수당 175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대체적으로 사업이나 회의 등을 축소하고 시책업무추진비도 감축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작년보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환경순찰 차량을 구매하기 위한 불가피한 비용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